

소수집단 학생 지원 규정

(제정 2022. 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소수집단 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 지원 등 학생 지원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소수집단 학생”이란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을 말한다.
- ② “장애”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 ③ “장애학생”이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등록증 소지자)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
- ④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의 학위 취득과정, 한국어교육센터의 어학연수 과정, 교환교류 및 복수학위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총칭한다.
- ⑤ “다문화 학생”이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 모 중 1명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학생을 말한다.
- ⑥ “북한이탈주민 학생”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적하는 모든 소수집단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담당부서) 소수집단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2. 외국인 유학생: 국제교류원
3. 다문화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학생지원실
4. 그 밖의 학습 지원, 장학금 지원 및 학사 제도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사지원실, 학생지원실

제5조(지원범위) 소수집단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생활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우미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소수집단 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소수집단 학생 지원과 정책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규정」,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원 규정」과 「외국인 유학생 선발 및 운영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 ③ 기획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수집단 학생 지원 및 운영 계획 수립
2. 소수집단 학생 지원 규정 및 관련 지침 수립, 개정에 관한 사항
3. 소수집단 학생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소수집단 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수집단 학생 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실에서 담당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